의안번호	제2819호		
의결연월일	2024. 7. 16. (제295회)		

의	
결	
사 항	
항	

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제 의 자	고성군의회의장		
제의연월일	2024. 7. 16.		

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의 안 번 호 제2819호

제의연월일: 2024. 7. 16.

제 의 자: 고성군의회의장

1. 제의이유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·기금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고성군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.

2. 심사안건

○ 고성군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·기금결산 종합심사

3. 위원임기: 선임일로부터 2026. 6. 30.까지

4. 위원 선임내역(안): 10명

소속위원회	위 원 명	刊	고
기획행정위원회	허옥희, 이정숙, 우정욱, 최두임, 김희태		
산업경제위원회	김석한, 김원순, 이쌍자, 김향숙, 정영환		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・처리하는 상임위원회
- 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의회는 예산안,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변경계획안)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④ <삭제 2022. 1. 13 조 2709>
-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